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대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법원 판례중심 약관해설서

김영길 지음

(주)곰제작소

제 2024BD 호

합 격 증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2024 년 시행 신 체 손해사정사 제 2 차 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머리말

본 서는 평생 자동차보험의 면부책, 소송, 구상, 교육, 민원, 손해사정현장에서 몸소 경험하고 익힌 보상지식과 자동차보험 약관 및 판례 연구 자료를 고스란히 담아낸 국내 유일의 대법원 판례중심 정통약관해설서로서, 난해한 자동차보험 과목을 보다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험생 눈높이에 맞춰 집필한 기본서입니다.

본 서의 집필방향

① 자동차보험의 큰 그림을 교재 서두에 삽입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과목의 공부범위 및 공부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2000년 이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교재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출제경향을 한눈에 파악해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재 본문에도 삽입해둠으로써 교재 정독 시 기출 여부를 체크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② 자동차보험 약관 편제 순서에 따라 서술함으로써 약관 탐독 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출제 가능성이 낮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생략하되 수험에 필요한 핵심사항은 빠짐없이 수록함으로써 기본서(참고서)로서의 완성도 및 적합도를 높였습니다.

③ 어렵고 애매한 영역, 다툼이 되는 영역(쟁점)마다 연습문제, 사례문제, 약관산책, 판례산책, 복습문제, 쉼터 등을 삽입함으로써 어려운 자보 과목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④ 이론상 다툼이 있는 영역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습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답안작성 시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

① 제46회 시험(2023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② 12-14급 최저보장금 예외 편에 연습문제와 복습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③ 상속 편에 상속결격, 상속승인, 상속포기를 추가하였습니다.

④ 오타 및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 본 서 출간 이후 변경되는 사항들은 강의시간을 통해 요약·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정통 약관해설서인 깨롱이 기본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묘미를 만끽하시고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본 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되고 자동차보험약관 관련 지식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속 시원히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통 이론서가 없어서 답답하셨던 독자 제현님들에게는 올바른 약관해석의 지침과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졸저에 변함없이 보내준 독자, 수험생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사랑에 부응하고 영혼이 있는 정통 약관해설서의 著者로서 부끄럼없는 노력과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8월

저자 깨롱이 씀

추천사

자동차보상실무의 직접적인 규범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보험약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보험약관 중에 하나이고 오랜 기간동안 개정을 통하여 많이 다듬어져 왔으나 현재에도 여전히 보상실무 및 소송실무에서는 그 해석을 두고 법리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난해한 약관인 것은 분명하다. 이는 자동차 보험이 기본적으로는 일반 민·상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간으로 하고 나아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 및 상해보험에 대한 담보를 종합적으로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서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보험소송의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보험사 소송담당자 뿐만 아니라 그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 나아가 최종적인 판단을 맡고 있는 재판부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가 보험사에서 보상실무 최고책임자로 은퇴하기까지 한평생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리한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집대성한 본서의 출간은 위와 같은 실무계에서의 오랜 답답함을 풀어주는 소나기와 다름없다 하겠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이해 및 해설을 목적으로 집필이 되었지만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쉽게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을 바탕으로 보상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폭넓은 보상관련 법률지식과 판례 등이 저자의 훌륭한 리걸마인드에 의해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어 실제로 보상실무를 담당하는 현직 보험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송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들에게도 항상 옆에 두고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한 이러한 역저가 탄생하기까지 당연히 바쳐졌을 저자의 청춘 및 열정에 무한한 감동과 경의를 표한다.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김남성

1. 최근 10년간 1차시험(절대평가)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현황

연도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2023년	5,238	1,717	32.7%
2022년	4,809	1,795	37.3%
2021년	5,217	1,485	28.4%
2020년	5,221	1,405	26.9%
2019년	4,583	1,667	36.3%
2018년	4,947	1,644	33.2%
2017년	4,926	825	16.7%
2016년	4,351	1,224	28.1%
2015년	4,169	1,507	36.1%
2014년	4,481	802	17.9%

2. 최근 10년간 2차시험(상대평가) 접수자, 응시율, 합격률, 커트라인 현황

연도	접수자 (명)	응시자 (명)	응시율 (%)	합격자 (명)	합격률 (%)	커트라인 (점)	최고득점 (점)	합격자(%)		
								20대	30대	40대이상
2023년	3,037	홈페이지 수험자료실 참고하세요								
2022년	3,075	2,150	69.9	340	15.8	55.00	71.67	28.6	39.8	31.6
2021년	2,981	2,114	70.9	343	16.2	53.50	67.92	28.7	41.9	29.4
2020년	3,121	2,229	71.4	325	14.6	51.25	65.50	38.3	41.3	20.4
2019년	3,249	2,290	70.5	328	14.3	50.42	68.75	36.0	43.8	20.2
2018년	3,177	2,232	70.3	409	18.3	50.83	69.25	32.6	44.2	23.3
2017년	2,786	1,892	67.9	381	20.1	44.42	67.89	32.2	45.1	22.7
2016년	3,323	2,180	65.6	470	21.6	50.25	76.17	28.6	44.8	26.6
2015년	3,247	2,097	64.6	501	23.9	44.08	71.67			
2014년	2,739	1,816	66.3	591	32.5	42.33	74.45			

【연간 강의 커리큘럼】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차	기본이론	실전 문제풀이					
2차		기본이론			핵심정리 & 기출문제풀이		

3. 1TOP손해사정전문학원의 First & Only

1.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스마트 수험지원 시스템 → 특허청 특허출원(홈페이지 참조)	온라인모의고사 응시시스템(1차과목), 온라인첨삭 전용시스템(2차과목), 완강업로드 서비스, 합격에 최적화한 커리큘럼, 스마트밴드 가입 시스템, 상설상담소 운영 등 1TOP학원에서만 가능한 수험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저렴한 수강료	반값 수준의 착한 가격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 최강의 1타 강사진	1타 강사를 찾아 이 학원, 저 학원을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4. 국내 최다 컨텐츠 제공	선택에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게끔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 1타 장학생 제도 운영	장학생 제도를 정례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1topacademy.com / 뒷표지 QR 코드) 참조

<table>
<tr><th></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r>
<tr><td></td><td colspan="2">전국연합모의고사
(1 · 2 · 3회차)</td><td></td><td></td><td></td><td></td></tr>
<tr><td></td><td>전국연합모의고사
(1회차)</td><td colspan="3">실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td><td>전국연합모의고사
(2회차)</td><td></td></tr>
</table>

4. 시험에 떨어지는 수험생 유형(뼈 때리는 불합격 10계명)

① 시간을 못내거나 시간을 안내는 사람 – 자격증 취득이 우선 순위가 아닌 사람이다. 우선 순위부터 정해서 시험을 포기하든지 시간을 내든지 양자택일하라.

②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 – 자기성찰과 손해사정사에 대한 vision, 자격증 취득의 목적부터 세워라.

③ 공부계획표, 수험전략없이 무턱대고 공부하는 사람 – 네비게이션도 없이 운전하는 격이고 눈감고 운전하는 격이다.

④ 공부의지, 공부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 중단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공부의 지속성을 유지하라.

⑤ 시험을 얕잡아 보거나 찍어서 공부하는 사람 – 시험앞에 겸허해질 때 합격한다. 교만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마라.

⑥ 이 책 저책, 이 자료, 저 자료, 이 학원 저 학원 강의를 모두 섭렵하려는 사람 – 수집생이 되지 말고 수험생이 되라.

⑦ 교재정독 소홀히 하는 사람 – 기본서 다독이야말로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본서 다독으로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다져라.

⑧ 이해 없이 덮어놓고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 단순 무식하게 암기해서 절대 합격못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라.

⑨ 지문 탐독(해석)을 엉뚱하게 하거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 탈락자 중 지문탐독 잘못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혹시 난독증이라면 난독증 치료부터 먼저 하라.

⑩ 강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 본인만 손해다. 강사를 믿고 강사를 믿는 자기 자신을 믿을 때 비로소 합격의 문이 열린다.

※ 위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거의 99.9%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개 항목에만 해당돼도 합격은 쉽지 않습니다. 유념하셔서 시험에 합격하는 유형의 수험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1) 시험과목

제1차 시험

구분	1 교시	2 교시
	10 : 00 ~ 11 : 20 (80분)	11 : 50 ~ 12 : 30 (40분)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제2차 시험

구분	시간	과목
재물 손해사정사	1교시 (10 : 00 ~ 11 : 30, 90분)	회계원리
	2교시 (11 : 50 ~ 13 : 20, 90분)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 (14 : 20 ~ 15 : 50, 90분)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차량 손해사정사	1교시 (10 : 00 ~ 11 : 30, 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 (11 : 50 ~ 13 : 20, 90분)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손해사정사	1교시 (10 : 00 ~ 11 : 30, 90분)	의학이론
	2교시 (11 : 50 ~ 13 : 20, 90분)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3교시 (14 : 20 ~ 15 : 50, 90분)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교시 (16 : 10 ~ 17 : 40, 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2)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손해사정사	재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전과목 평균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 50명
	차량			선발예정인원 : 110명
	신체			선발예정인원 : 340명

※ 선발예정인원은 2023년 제46회 손해사정사 시험 선발예정인원 기준입니다.

목차

PART 01 자동차보험의 큰 그림

CHAPTER 01 한 눈에 보는 자동차보험 ····· 2

CHAPTER 02 자동차보험의 종목(상품) ····· 3

CHAPTER 03 자동차보험의 약관체계(편제) ····· 4

CHAPTER 04 기본담보(=전담보) 및 각 담보별 특징 요약 ····· 5

CHAPTER 05 배상책임 담보와 非배상책임 담보의 본질적 차이점 ····· 7

01 배상책임 담보(3단 구조) → 책임보험 • 7

02 非배상책임 담보(2단 구조) → 상해보험 • 7

CHAPTER 06 대인배상 Ⅰ·Ⅱ 면부책판단요령 3단계 ····· 8

CHAPTER 07 용어의 정의 ····· 10

PART 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CHAPTER 01 자배법의 개요 ····· 16

01 제정취지 • 16

02 자배법 제3조 및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요건 4가지 • 16

CHAPTER 02 손해배상의 주체(=운행자) ····· 17

01 운행자의 개념 • 17

02 운행자와 구별되는 개념 • 19

03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논의되는) 특수 유형 • 24

CHAPTER 03 자동차의 운행과 운행기인성 ····· 47

01 자동차의 정의 • 47

02 운행의 정의 • 48

03 운행기인성(상당인과관계) • 49

CHAPTER 04 손해배상의 객체(=다른사람) ····· 51

01 다른사람(타인)의 개념 • 51

02 타인성이 논의되는 주요 유형 • 51

CHAPTER 05 면책사유 ····· 54
01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운행자 면책요건(자배법 제3조 단서 제1호) • 54
02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운행자 면책요건(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 55

PART 03 민법

CHAPTER 01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 60
01 의의 • 60
0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60
03 불법행위의 효과 • 64
04 자배법상 책임(자배법 제3조)과 민법상 책임(민법 제750조)의 주요 차이점 • 65

CHAPTER 02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 ····· 68
01 의의 • 68
02 사용자 책임의 성격 • 68
03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 • 69

CHAPTER 03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 71
01 의의 • 71
02 효과 • 71

CHAPTER 04 상속 ····· 76
01 의의 • 76
02 상속순위 • 76
03 상속지분 • 77
04 대습상속 • 78
05 태아의 권리능력 • 79
06 상속결격 • 83
07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 83

CHAPTER 05 법정대리 ····· 86
01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 86
02 성년후견제 • 86
03 일상가사대리 • 87

목차

CHAPTER 06 합의 ····· 88
01 합의의 의의 • 88
02 합의의 당사자/합의권자 • 88
03 합의의 효력 • 89
04 합의효력의 제한 • 89

CHAPTER 07 혼동 ····· 91
01 의의 • 91
02 인정취지 • 91
03 혼동의 효과 • 91
04 예외 • 92
05 사례연습 • 94

CHAPTER 08 소멸시효 ····· 96
01 의의 • 96
0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 96
03 법률상장해·사실상장해 • 96
04 소멸시효의 중단 • 97
05 시효완성의 효력 • 98
06 제척기간과의 구별 • 98

PART 04 보통약관의 보상책임론

CHAPTER 01 피보험자의 개념 및 종류/ 피보험자개별적용 ····· 106
01 피보험자의 개념 • 106
02 피보험자의 종류 • 106
03 피보험자개별적용 • 112

CHAPTER 02 대인배상 I ····· 123
01 보상책임 발생요건 및 지급보험금 계산 • 123
02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 123
03 지급보험금의 계산 • 126

CHAPTER 03 대인배상 II ····· 128
01 보상책임 발생요건 및 지급보험금 계산 • 128

02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 129
03 지급보험금의 계산 • 150

CHAPTER 04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사고후미조치 운전 사고부담금 ····· 152
01 약관규정 • 152
02 의의 • 152
03 사고부담금의 성격 • 153
04 담보별 사고부담금 • 153
05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사고후미조치 운전이 중복된 경우 부담금 관계 • 153
06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개별적용 관계 • 154
07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154
08 기타 • 154

CHAPTER 05 자기신체사고 ····· 157
01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성격 • 157
02 보상책임발생 요건(3가지) • 157
03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 160

CHAPTER 06 무보험자동차상해 ····· 162
01 담보의 성격 및 특징 • 162
02 보상책임 발생요건(4가지) • 163
03 지급보험금의 계산 • 168

CHAPTER 07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피해자직접청구권) ····· 172
01 피해자직접청구권의 의의 • 172
02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 • 173
03 피해자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경합(우선권 문제) • 174

CHAPTER 08 분담 ····· 178
01 보험계약이 중복되는 경우의 분담 • 178
02 피보험자가 복수일 경우의 분담 • 180
03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과의 분담 • 180

CHAPTER 09 대위 ····· 181
01 의의 • 181
02 자동차보험 약관에서의 보험자대위 • 182
03 가족에 대한 보험자대위 금지 • 182

목차

04 보험자대위와 구상권의 구별 • 182

CHAPTER 10 보험기간 ····· 183
01 의의 • 183
02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 184

CHAPTER 11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및 교체 ····· 185
01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185
02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 • 187

PART 05 보통약관의 보상범위론(지급기준)

CHAPTER 01 지급기준의 의의 ····· 192

CHAPTER 02 사망보험금(대인배상 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193
01 장례비 • 193
02 위자료 • 193
03 상실수익액 • 194
04 중간이자 공제 • 194

CHAPTER 03 부상보험금(대인배상 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196
01 적극손해 • 196
02 위자료 • 197
03 휴업손해 • 198
04 간병비 • 199
05 그밖의 손해배상금 • 200

CHAPTER 04 장해보험금(대인배상 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201
01 위자료 • 201
02 상실수익액 • 202
03 가정간호비 • 202
04 자동차사고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 평가방법 • 204

CHAPTER 05 사망 및 장해 상실수익액 산정시 취업가능월수(대인배상 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207

CHAPTER 06 과실상계(대인배상 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209
01 의의 • 209
02 적용담보 • 209
03 적용순서 • 210
04 과실상계의 성립요건 • 210
05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약한 의미의 과실)과 강력한 과실과의 구별 • 211
06 피해자측과실 • 212
0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 214

CHAPTER 07 최저보장금 제도(대인배상 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216
01 의의 • 217
02 적용예시 • 217
03 최저보장금 적용 예외 • 218

CHAPTER 08 신뢰의 원칙 ····· 235
01 신뢰의 원칙의 의의 • 235
02 신뢰의 원칙 적용 효과 및 주요 유형 • 235

CHAPTER 09 동승자감액 ····· 237

CHAPTER 10 과실상계/손익상계/호의동승 감액의 구별 ····· 238
01 손익상계 • 238
02 호의동승감액(동승자감액) • 239
03 과실상계, 손익상계, 호의동승감액의 유사성과 이질성 • 241
04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적용순서 • 241

CHAPTER 11 기왕증 ····· 242
01 의의 • 242
02 기왕증, 기왕의 장해,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 243

CHAPTER 12 배상책임 담보 및 자기신체사고의 소송 시 특칙 ····· 246
01 의의 • 246
02 본 규정(특칙규정)의 근원 • 246
03 지급기준과 법원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 • 246

목차

PART 06 특별약관

CHAPTER 01 운전자범위제한 특별약관 ····· 256
01 의의 • 256
02 특약위배 시 효과 • 256
03 면책예외 • 257
04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의 종류 • 260

CHAPTER 02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 ····· 262
01 의의 • 262
02 특약위배 시 효과 • 262
03 면책예외 • 262
04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의 종류 • 262

CHAPTER 03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 264
01 개념 • 264
02 보상책임 발생요건 • 264
03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타차특약 적용 여부 • 274

CHAPTER 04 의무보험일시담보 특별약관 ····· 276
01 의의 • 276
02 적용대상 • 276
03 보상책임 발생 요건 • 276
04 기명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277
05 면책사유 • 277
06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277

CHAPTER 05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 278
01 의의 • 278
02 보험종목별 가입대상 차종 • 278
03 특약의 내용(가입시 효과) • 279

CHAPTER 06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280
01 의의 • 280
02 분할 보험료의 납입방법 • 280
03 분할 보험료의 미납 및 미납 시 납입 최고 • 280

PART 07 기타

CHAPTER 01 구상유형 ····· 284

01 공불사고에서 제3자의 손해를 대인배상Ⅰ·Ⅱ로 보상 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CASE • 284

02 피보험자개별적용으로 대인배상Ⅰ·Ⅱ 보상 후 제3자(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CASE • 285

03 피보험자개별적용으로 대인배상Ⅰ·Ⅱ 보상 후 면책되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CASE(고의사고에 한함) • 286

04 고의사고에서 대인배상Ⅰ 보상 후 피보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CASE • 286

05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사고후미조치 운전 사고부담금 • 287

06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CASE • 287

07 정부보장사업금 지급 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CASE • 288

CHAPTER 02 보장사업 ····· 289

01 의의 • 289

02 보장사업의 주체 • 289

03 보장사업의 내용 • 289

CHAPTER 03 보험금 계산연습 기초사례 10選 ····· 295

부록

Ⅰ. 기출문제 • 304

Ⅱ.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지급기준(별표1, 3, 4, 5) • 329

Ⅲ. 시험 공부요령 및 답안 작성요령 • 344

PART 01

자동차보험의 큰 그림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습관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CHAPTER

01 한 눈에 보는 자동차보험

<table>
<tr><td>배상책임론</td><td colspan="3">자배법 / 민법 : 대인배상 Ⅰ.Ⅱ(배상책임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면부책 판단 1단계)</td><td>非약관
영역</td></tr>
<tr><td rowspan="6">보통약관의
보상책임론</td><td colspan="2">피보험자 : 자동차보험 약관공부의 기본</td><td>면부책 판단
2단계</td><td rowspan="8">약관영역

(약관 편제
순서에 따름)</td></tr>
<tr><td colspan="2">피보험자개별적용 : 자동차보험 약관공부의 핵심</td><td rowspan="2">면부책 판단
3단계</td></tr>
<tr><td colspan="2">담보별 면책사유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상의 면책사유
(피보험자가 복수면 개별적용)</td></tr>
<tr><td rowspan="4">담보</td><td>대인배상 Ⅰ</td><td rowspan="2">배상책임담보 = 3단구조
보험자
피보험자
피해자</td></tr>
<tr><td>대인배상Ⅱ</td></tr>
<tr><td>자기신체사고</td><td rowspan="2">非배상책임담보(상해보험)
= 2단구조
보험자
피보험자</td></tr>
<tr><td>무보험자동차상해</td></tr>
<tr><td colspan="3">보험금(손해배상금) 청구 : 피해자직접청구권 / 분담 / 대위 등</td></tr>
<tr><td colspan="3">일반사항 : 보험기간 / 양도, 교체 등</td></tr>
<tr><td>보통약관의
보상범위론</td><td colspan="3">지급기준 : 보험금산출(계산) 및 그에 수반되는 과실상계 / 동승자감액 / 기왕증 등</td></tr>
<tr><td>특별약관</td><td colspan="3">한정운전특별약관 / 타차특약 /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등</td></tr>
<tr><td>구상</td><td colspan="3">수험생들의 기피대상1호, 그러나 구상을 모르고 이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td><td>중간영역</td></tr>
<tr><td>보장사업</td><td colspan="3">대인배상 Ⅰ / 무보험자동차상해와 헷갈리는 알쏭달쏭한 녀석</td><td>非약관
영역</td></tr>
<tr><td>포기영역</td><td colspan="3">교재 밖에서 나올 것을 염려하여 교재 밖을 투어하는 것은 금물이다.
출제자가 맘먹고 변두리 영역, 돌발문제를 출제하면 어차피 방법이 없으므로(조건은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다) 지엽말단 영역을 찾아 여기 저기 헤매기 보다 욕심을 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본교재를 한번 더 정독하여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td><td>신의영역</td></tr>
</table>

CHAPTER

02 자동차보험의 종목(상품)

자동차보험의 종목(상품)은 기본적으로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이 있으며 약관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험준비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보험종목	가입대상	약관구성
개인용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1] 단,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CHAPTER3. 자동차보험의 약관체계(편제) 참조
업무용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예 개인소유 자가용 승합차, 화물차 / 법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상동
영업용	사업용 자동차	상동 ※ 단,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기본담보에서 제외되어 있다(특약으로 가입 가능)

1) 자가용 자동차와 잘 구별해야 한다.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영업용)자동차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가용 자동차가 되는 것이다.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승용차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예컨대, 승합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승합차)가 되는 것이고, 승용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자가용 승용차가 아닌 사업용 승용차(택시)가 되는 것이다. 관용 자동차도 자가용 자동차에서 제외된다.

CHAPTER

03 자동차보험의 약관체계(편제)

자동차보험 약관은 크게 보통약관(표준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약관은 표준약관으로서 업계 공통이나 특별약관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달리 운용하고 있다.

[보통약관 편제]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1. 용어의 정의
2.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1. 대인배상 I
2.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3.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 자기신체사고
2.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3. 자기차량손해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및 지급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장 그 밖의 사항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기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3 과실상계 등
별표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붙임1> 상해구분 및 상해급별 대인배상 I 한도액
<붙임2> 장해구분 및 장해급별 대인배상 I 한도액

[주요 특별약관]

1. 운전자제한 특별약관
   -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기명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등)
   -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만 21세, 만 24세, 만 30세, 48세 등등)
2.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3. 의무보험일시담보 특별약관
4.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5.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위 특별약관 외에도 각 보험사별로 수많은 특별약관을 운용중이나 시험준비는 위 약관으로 준비하면 된다.

CHAPTER

04 기본담보(= 전담보)[2] 및 각 담보별 특징 요약

담보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면책사유	보상내용 (보상한도)
대인배상 Ⅰ (의무보험) → 배상책임 보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상하여 자배법상 책임을 질 때 * 자배법만 적용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승낙피보험자 ④ 사용피보험자 ⑤ 운전피보험자 ⑥ 위 각 호의 피보험자 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3]	고 * 피해자 직접 청구시? 보상후 피보험자에게 구상	• 사망 : 1.5억원 한도 내 보상 / 최저 : 2천만원 • 부상 및 장해 : 부상 및 장해급별(1급~14급) 각 보상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Ⅱ → 배상책임 보험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상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 자배법과 민법 모두 적용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승낙피보험자 ④ 사용피보험자 ⑤ 운전피보험자 * 취급업자는 승낙피보험자 및 운전피보험자에서 제외	고/전/지/핵/영/3/시/피가/산 * 개별적용 예외조항? 고/영/시	대인배상 Ⅰ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4] 한도 내 보상
자기신체사고 (과실상계 ×) → 상해보험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② 운행 중 발생한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와의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사고 (탑승 중일때만 적용)로 피보험자가 사상한 때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승낙피보험자 ④ 사용피보험자 ⑤ 운전피보험자 ⑥ 위 각 호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취급업자는 승낙피보험자 및 운전피보험자에서 제외	고/전/지/핵/영/시	• 사망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장해 : 각 장해급별(1급~14급)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부상 : 각 부상급별(1급~14급)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2)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기차량손해를 기본담보 내지 전담보라고 한다.
3) '기타보유피보험자'라고 부른다. 보유피보험자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인배상 Ⅰ – 피보험자 편 참조
4) 대인배상Ⅱ의 보험가입금액은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이 있는데 거의 무한에 가입하고 있다.

담보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면책사유	보상내용 (보상한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상해보험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상하였을 때	①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④ 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 취급업자는 승낙피보험자 및 운전피보험자에서 제외 • 사위, 며느리, 계부모는 제외	고/전/지/ 핵/영/시/ 영/배	보험가입금액[5] 한도 내 보상 단, 개인형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대인배상Ⅰ 한도내 보상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주차와 정차는 제외) 중 생긴 법률손해배상책임 및 피보험자가 사상했을 때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 타차소유자는 간주규정에 의거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에 포함	사/법/취/ 유/정/소/ 시/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초과손해 보상

5)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5억원/7억원이 있는데 통상 2억원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

CHAPTER

05 배상책임 담보와 非배상책임 담보의 본질적 차이점

01 배상책임[6] 담보(3단 구조) →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여 남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거 계약자(피보험자) 대신 물어주는(보상하는) 구조이다(피보험자 ≠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래 非배상책임 담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인배상Ⅰ·Ⅱ가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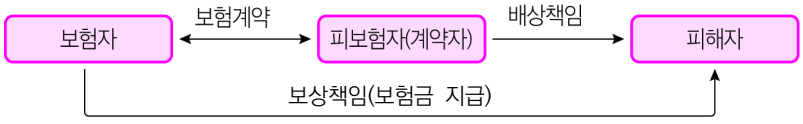

02 非배상책임 담보(2단 구조) → 상해보험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물어주는(보상하는) 구조이다(피보험자 = 피해자).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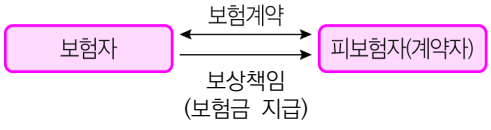

6) 배상책임과 보상책임 : 배상책임은 법률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고 법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 즉 위법 내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예컨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영조물(도로, 교통신호기 등)의 하자(흠)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고, 자동차사고의 경우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어야 할 책임이 생기는데 이를 배상책임이라고 한다. 반면에, 보상책임은 배상책임과 달리 적법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예컨대, 국가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거 강제로 수용하는 행정 처분 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CHAPTER

06 대인배상 Ⅰ·Ⅱ 면부책판단요령 3단계

(면부책 판단 밑그림 – 다이아몬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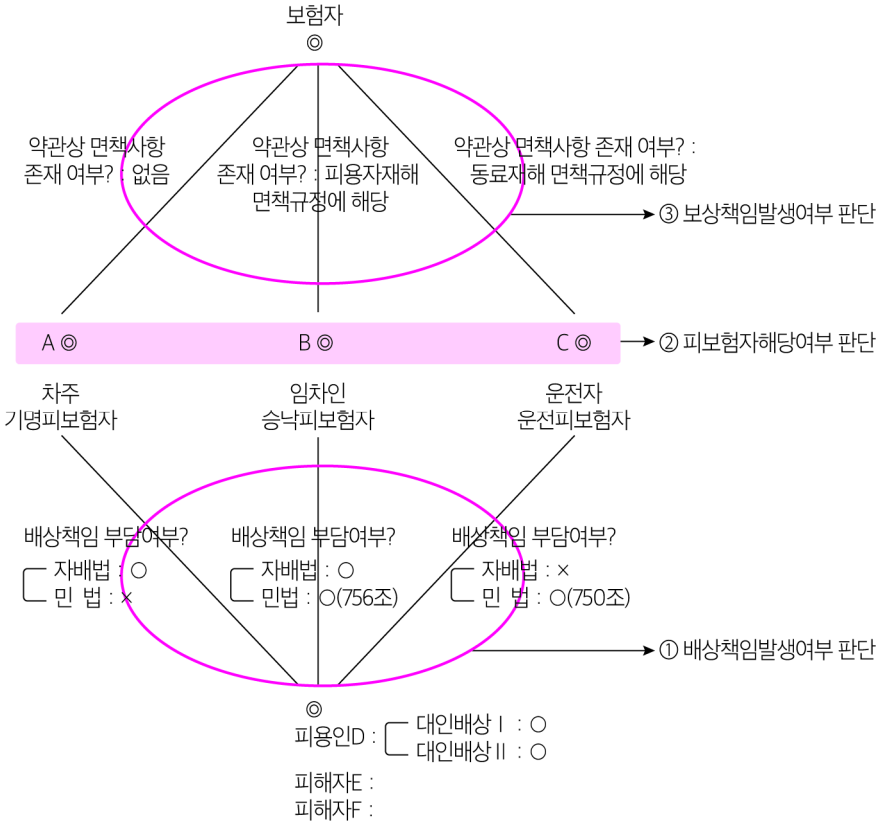

[B가 친구 A로부터 차량을 빌려 종업원 C로 하여금 운전케 하다가 같은 회사 종업원 D를 충격한 사고]

배상책임 담보의 면·부책을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대로 하면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 숫자가 많아도 어렵지 않게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단계 잠재적 배상의무자들(소유자 내지 임차인 내지 운전자)을 중앙에 횡으로 나열시킨 다음 이들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자배법 및 민법으로 나누어 판단한다(피해자 D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여부를 피보험자별로 각 판단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을 빠짐없이 나열시켜야 하고, 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대인배상 Ⅰ은 자배법상 책임만 보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2단계(피보험자 해당 여부), 3단계(약관상 면책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면책된다.

2단계 배상의무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역시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3단계(약관상 면책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면책된다.

3단계 각 피보험자에게 약관상 면책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피보험자별로 판단한다(피보험자개별적용).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더라도 약관상 면책사항이 있으면 역시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개별적용)

- A는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보험자에도 해당하고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으므로 대인배상Ⅰ·Ⅱ 부책이 된다.
- B는 자배법 및 민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보험자에도 해당되지만 업무상재해 면책규정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Ⅱ는 면책이 된다.
- C는 민법상 배상책임만 부담하므로 대인배상Ⅰ은 면책된다(C는 약관상 면책사유는 없지만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면책되는 것이다).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만 업무상재해 면책규정에 해당되므로 면책이 된다.

결론 : 대인배상Ⅰ·Ⅱ 부책

- **대인배상Ⅰ** : 약관상 면책사유(고의사고)가 없으므로 A, B가 부담하는 자배법상 책임에 대하여 부책한다(부책 후 면책되는 피보험자 C에 대해 구상불가 : 피보험자이므로).
- **대인배상Ⅱ** : B, C와의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이지만 A와의 관계에서는 면책사유가 없으므로 피보험자 개별적용 결과 부책한다(A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부책한다. 부책 후 면책되는 피보험자 B, C를 상대로 구상불가 : 피보험자이므로).

☞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상해는 非배상책임 담보(상해보험)이므로 위 1단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없다.

☞ 위 그림상 가운데 라인에 위치한 자들은(A, B, C 등) 대인배상Ⅰ·Ⅱ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예외 :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임차한 임차인). 하단에 위치한 자들(D, E, F 등)이 대인배상Ⅰ·Ⅱ 보상대상이 된다.

CHAPTER

07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생략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생략

⑰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⑱ 보험가액

생략

⑲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HECKLIST

반복 또 **반복**하세요!

기본서 **반복** 정독이야말로 **합격**으로 가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교재 회독 수 체크리스트

구분	년 / 월 / 일	내용 이해도(%)	서명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8회독			
9회독			
10회독			
11회독			
12회독			

PART 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및 민법 편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 소유자 내지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소유자 내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담보, 즉 대인배상Ⅰ·Ⅱ의 보상책임도 발생하지 않게된다. 대인배상Ⅰ·Ⅱ는 소유자 내지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인배상Ⅰ·Ⅱ 담보에서 소유자 내지 사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약관상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까지 더 나아갈 필요도 없이 보험자는 곧바로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자 내지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배상책임 면·부책에 대한 이해)는 보험자가 대인배상Ⅰ·Ⅱ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보상책임 면·부책)를 판단하기 위한 우선 과제이자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 자배법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내지 학습이 부족하여 시험 임박 순간까지 사례형 문제의 면·부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헤매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강의현장에서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배법 이론을 제대로 정복하여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HAPTER

01 자배법의 개요

01 제정취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만 의존해 오던 것을 1963년에 제정, 시행하게 된 법이다. 자배법은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의 채택,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통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가입의 강제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보다 확고히 하고 있다.

02 자배법 제3조 및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요건 4가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통상 운행자책임이라 부른다.) 발생요건에 관한 규정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아래 네 가지로 요약된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결여되어도 운행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네 가지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후술함).

① 손해배상의 주체가 운행자에 해당할 것
② 자동차(자배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할 것(운행 중 사고 및 운행기인성 여부)
③ 손해배상의 객체가 타인(다른사람)에 해당할 것
④ 면책사유가 없을 것

CHAPTER

02 손해배상의 주체(= 운행자)

01 운행자의 개념★★★★★

자배법상 운행자라 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뜻한다(자배법 제3조). 법원(판례)에서는 통상, 1)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2)그 운행 이익을 향수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7] 운행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

1 운행지배

자동차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는 것, 즉,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8]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지배가능성만 있어도 족하다고 한다(운행지배 개념의 규범화, 추상화).

2 운행이익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이익을 말한다. 간접적·경제적 이익, 임대료, 명의료는 물론 무상 대여에 따른 정신적 만족감도 포함된다.

7) 운행자 판단과 관련하여, 운행지배의 요소와 운행이익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운행자를 인정하자는 이원설의 입장과, 운행이익이란 운행지배의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므로 운행지배만을 기준으로 인정하자는 일원설의 입장이 있는데 판례는 이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외 다수).

8) 운행 목적지를 정하고 변경한다거나, 경로를 지정하고 변경한다거나 중간에 휴식을 취할 것인지 여부, 취한다면 어느 장소에서 얼마 동안이나 취할 것인지, 동승객을 태울건지 여부, 사고방지 주의의무 등 자동차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지배권을 말한다.

깨롱이의 자배법 산책 운행자 개념★★★★★

자배법을 공부하다보면, 운행자 개념을 속시원히, 제대로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워낙 추상적, 포괄적이다 보니 법조문(자배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내지 판례에서 풀이하는 운행자 개념(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과 개별 사안에서의 운행자 개념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운행자의 개념을 자배법 제3조 내지 판례에서 풀이하는 문구 그대로, 즉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내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로 해석해서는 해답을 구하기 어려운 유형들이 있는데, 바로 아래 유형입니다.

1. 소유자

소유자 A가 친구 B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어 B가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여행 등)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자동차를 빌려준 사실 밖에 없는 A가 운행자에 해당할까? 운행자라 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를 뜻하는데, A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했다거나, A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린다고(향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A는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 Tip 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기 바랍니다. 특단의 사정이라 함은 소유자의 과실없는 절취운전 사고, 양도가 완성된 이후 양수인이 야기한 사고, 수리업자에게 자동차가 인도된 이후 수리업자가 야기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이 부분 후술함).

2. 임차인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경우는 물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차 빌려주거나 제3자에게 운전케 하고 탑승한 경우에도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 B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에 해당하므로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B가 C에게 재차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또는 C에게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해 가다가 C가 사고를 낸 경우 B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내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 즉 운행자로 볼 수 있을까? 위 소유자 편에서 살펴보았지만 해석론상 운행자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B는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 Tip 임차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에게 재차 빌려준 경우 및 제3자에게 운전케 하고 탑승한 경우에도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기하기 바랍니다. 특단의 사정이라 함은 자동차와 함께 운전기사를 같이 임차한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이 부분 후술함).
>
> ※ 일시적인 교체운전자 : 예컨대, 위 사례에서 B가 자신의 친구(또는 애인, 또는 배우자) C에게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감을 덜기 위해 잠시 운전을 맡긴 경우 C가 운행자에 해당할까? 운전자 개념 설명시 재차 언급하겠지만 C는 운행자에 해당합니다(이 부분 후술함).

3. 정리

운행자라 함은 해석론상(이론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내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를 뜻하지만 이 개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소유자, 임차인은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기하기 바랍니다.

02 운행자와 구별되는 개념★★★★★

1 공동운행자

하나의 사고에 운행자가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업자 관계나 공동임차인 관계,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관계, 보유자와 무단운전자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동운행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고 상호간에는 자배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손해배상책임의 객체 요건 상실).

2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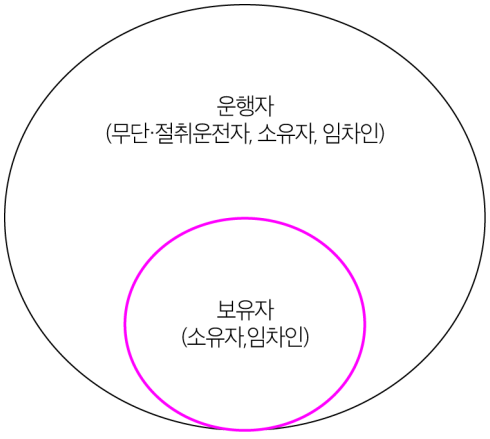

운행자가 보유자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보유자는 당연히 운행자에 해당되지만 운행자라고 하여 반드시 보유자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의 경우 운행자에는 해당되지만 보유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유자는 곧 운행자에 해당되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해당된다.

3 운전자[9]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자배법 제2조 제4호). 자배법상 운전자는 자기 자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전혀 없고 오로지 운행자를 위하여 그 운행자의 수족으로써 운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10] 민법 750조에 따른 책임을 질 뿐 자배법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9) 민법상 운전자와 구별되는 개념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10) 사법연수원 著 '손해배상소송' 참조

운전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자배법상의 책임 주체는 오로지 운행자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객체도 될 수 없다. 자배법상 책임 객체는 오로지 타인(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을 뜻하기 때문이다. → 운전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 주체도, 객체도 될 수 없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배법상의 운전자라 함은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자배법상 손해배상 객체인 '다른사람'(자배법 제3조상의 다른 사람)과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주의하여야 한다. → 자배법 제2조 제4호의 '다른사람'과 자배법 제3조의 '다른사람'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같은 법률에 동일한 용어를 존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입법태도라 할 것이다.

민법상 운전자는 운전행위 당사자임을 의미하는데 반해 자배법상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했을 것과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할 뿐 자배법상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운전을 했음에도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소유자가 친구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어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는 운전 및 사고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운행자에 해당한다).

운전보조자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를 말한다. 통상 조수나 차장, 크레인차량의 물건걸기 보조자 등이 이에 속하며 운전보조자는 자배법상 운전자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선의의 보조행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예컨대, 길 가던 행인의 선의의 보조행위, 평소 조수로 근무하던 자가 휴일날 놀러가다가 자기 회사차량을 보고 일시적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행한 선의의 일시적 보조행위 등은 운전보조가 아니다. → 운전보조자는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4 다른사람(남, 타인)

자배법상 손해배상의 객체가 되는 자로서 운행자와 운전자(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사람'(=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사람')과 자배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다른사람'은 구별되는 개념임은 전술하였다.
한편, 민법상 다른사람(타인)은 가해당사자(사고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깨롱이의 자배법 산책 운행자와 운전자 구별법★★★★★

강의 현장에서 자배법상 운행자와 운전자의 개념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거나 구별 방법을 잘 몰라 애를 먹는 경우를 빈번히 경험하곤 합니다. 이에 양자의 차이점 및 구별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오니 명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자배법 정복은 요원합니다. 두세 번 정도 정독해 두면 운행자와 운전자 개념에 대하여 자신감도 갖게 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혼동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 **운행자라 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 운전자라 함은 '다른사람(=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운행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를 말하고, 운전자는 자기 자신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전혀(거의) 없고 오로지(거의 전적으로)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서 운행자의 지위(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향수)도 일부 가지고 있고 운전자의 지위(운행자를 위하여 운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A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친구들끼리(또는 가족끼리, 또는 애인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 그 중 일행 B가 대신 운전을 한 경우, B의 경우 자기 자신도 일정 정도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운행자인 듯한데 운행자인 A를 위하여 운전한 측면에서 보면 또 운전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B의 자배법상 지위는?

2. **자배법상 운전자라 함은**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한 일반적인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전혀(거의) 갖지 못하면서(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일부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운행자의 운행지배하에 운행자의 수족에 가까운 지위에서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일에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운전기사라든가(또는 운전기사에 준한다든지), 회사에서 운전업무가 본연의 업무인 자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는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이 없습니다(이들이 받는 급여가 운행이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급여는 여러 형태의 노동의 대가 중 '운전'이라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지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이익이 아닙니다). 오로지 운행자를 위해 운전할 뿐입니다. 자배법에서 운전자를 손해배상책임 주체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운행자를 위하여 수족으로서 운전한 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운전자에게는 자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자배법 제2조 제4호에 운전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바, 운전자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종사(從事)하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從事하는'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직업적인 일 내지 업무로써 운전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사전적 의미 + 자배법에서 운전자를 운행자와 구별하여 규정한 취지 + 운전자에게는 자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 취지 + 문맥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자배법상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지위는 동격이라는 점과 운전보조자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선의의 보조행위라든가 일시적, 호의적으로 운전행위를 보조한 경우는 운전보조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자배법상 운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신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하지 않을 것과 운행자의 운행지배하에 오로지(거의 전적으로) 운행자의 운행이익을 위하여 운행자의 수족에 가까운 지위에서 운전할 것과(물론 사안에 따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일부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해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업무수행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야 비로소 자배법상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기사(적어도 운전기사에 준하는 자)가 그 전형입니다.

3.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렌터카 회사(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A가 동승중인 동료 B로(친구, 애인, 가족 등) 하여금 운전케 한 경우, 길가에 세워둔 자동차를 A가 절취하여 음주, 유흥 후 애인 B를 불러내어 술취한 자신을 대신하여 B로 하여금 운전케 하다가 사고난 경우 등에 있어서 운전을 한 자의 자배법상 지위는 운전자가 아닌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B가 비록 운행자 A를 위하여 운전한 것은 맞지만 A를 위하여 운전한 것이 그의 수족으로써 한 것도 아니고 운전기사 내지 그에 준하는 지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직업적인 일(업무)로써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B는 운전자가 아닌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B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A에 버금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당해 운행의 공동 일원으로써 공동목적을 갖고 있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일정정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간명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운행자와 운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먼저 사고 운전자가 자배법상 운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서 그 요건을 충족하면 운전자 그렇지 않으면 운행자로 판단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운전자 요건이라 함은 단지 다른 사람(= 운행자)을 위하여 운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신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하지 않을 것과 운행자의 운행지배하에 오로지(거의 전적으로) 운행자를 위하여 운행자의 수족에 가까운 지위에서 운전할 것과 당해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업무수행성입니다.

> **핵심정리** 운전기사 또는 운전기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가를 살펴서 여기에 해당하면 운전자, 그렇지 않으면 운행자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컨대, 2012년 기출문제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12년 기출문제를 보면 직장상사(부장) 소유의 자동차를 부하직원이 몰고 업무차 출장을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 이때 부하직원의 지위를 운행자로 볼 것인가 운전자로 볼 것인가가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필자는 운전자로 판단합니다[11]).

한편, 위에서 제시한 구별법의 예외도 발생합니다. 대리운전의 경우가 바로 위 구별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자는 위 구별법에 따르면 운행자라기 보다는 운전자에 해당하지만 법원에서는 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필자는 운전자라고 봅니다). 대리운전자의 경우 사업자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좀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형태 또는 시험문제에서 제시되는 사고의 유형은 워낙 다양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이 애매한 경우나 예외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은 전문가들마저도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위 구별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지해 두면 큰 틀에서는 대부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약술기출

01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판단요소 기출 99

02 자배법상 운행자와 보유자, 약관상 대인배상Ⅰ·Ⅱ 피보험자를 비교, 설명하시오. 기출 11

03 자동차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법률상 지위 및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출 17

04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시오. 기출 18

05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과 민법상의 책임을 비교·설명하시오. 기출 20

11) 운행자와 운전자를 구별할 때 완전체의 운행자, 완전체의 운전자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에는 고용주, 후자에는 운전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형들은 운행자적 요소와 운전자적 요소들이 조금씩 혼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 사례에서 필자가 부하직원의 자배법상 지위를 운행자가 아닌 운전자로 본 근거는, 자배법상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뜻하는데, ① 사례의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완전체의 운행자 유형인 고용주와 완전체의 운전자 유형에 해당하는 운전기사 중에서 후자에 가깝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1. 자기를 위하여 운행했다고 볼 수 없고(회사를 위하여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상사의 지시 내지 지시 분위기에 의해 운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
3.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일환이며
4. 자가운전이라기보다 운전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논란이 되는 어떤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상반된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결론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03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논의되는) 특수 유형★★★★★

1 무단운전 사례기출 00/02/06/09/16

(1) 개념

무단운전에는 절취운전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무단운전과, 보유자와 친인척, 고용관계 등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보유자의 자동차를 운행한 협의의 무단운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단운전이라고 하면 절취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무단운전, 즉 협의의 무단운전을 의미한다.**

(2) 논의의 핵심[12)]

무단운전에서 무단운전 당사자가 운행자에 해당한다는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무단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어떻게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 부분이 무단운전에서 논의의 핵심이고 무단운전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면(운행자 책임이 긍정되면) 보유자와 무단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놓이게 되고 피해자가 보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보유자는 무단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보유자의 운행자성이 부정되면 무단운전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만약 보유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고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유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후 무단운전자(제3자 =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부책 후 구상).

(3) 보유자의 배상책임 관계

피해자에 대한 보유자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발생 여부는 아래와 같이 차 외부인의 경우와 차내 탑승인의 경우가 각 다르다.

① **피해자가 보행자 등과 같이 차 외부인인 경우** : 피해자가 보행자 등과 같이 차 외부인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은 예외 없이 인정된다. 무단운전의 극단성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극단성이 높은 경우에도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은 발생한다).

② **피해자가 무상동승자(호의동승자) 등 차내 동승객인 경우** : 무단운전 내용의 극단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부정의 근거 = 피해자의 타인성을 부정(조각)하는 것

12) 무단운전뿐만 아니라 절취운전을 비롯하여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논의되는) 특수 유형의 논의의 핵심은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어떻게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아니라 피해자의 타인성은 그대로 두고 보유자의 운행자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13]) 후자의 경우에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승객이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무단운전에 적극 가담하거나 종용하고, 운행경위와 목적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회통념상 선해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극단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단순히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다거나 적극 가담 내지 종용한 점만으로는 극단성이 높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무단운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운행자 책임 여부이다. 따라서 보유자의 민법 제750조 책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이해)하면 된다. 지문에 750조 책임 발생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도 않는다. 만에 하나, 750조 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보유자의 명백한 과실이 지문에 언급되면 750조 책임을 긍정하면 된다.

사례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이라고 한 사례★★★★

- 망 최**과 소외 1, 2는 모두 친구지간으로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리하여 위 망 최**과 소외 1이 사건 사고 전날 23 : 00경 먼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 집에 있던 위 망 소외 2를 전화로 불러 내어 위 망 소외 2가 이 사건 승합차를 타고 위 술집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잠시 후 위 망 소외 2의 제의에 따라 위 승합차로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여 위 3인과 소외 1의 여자친구인 소외 김** 등 4인이 위 승합차를 함께 타고 대구시내 앞산 순환도로와 수성못을 지나 봉덕동 소재 술집에 도착하여 다음날 02:00경까지 4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시 그곳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타고 포항시까지 놀러가기로 의기가 투합하여 위 술집을 나와 처음에는 위 망 소외 2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술기운으로 차량의 시동을 꺼뜨리는 등 운전에 곤란을 느끼게 되자 위 망 최**이 소외 1에게 대신 운전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소외 1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최**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 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위 승합차의 전면과 양 측면에는 "대구도시가스"라는 상호가 식별이 용이할 정도의 크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망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이 사건 사고전날 23:00경 망 소외 2가 처음 술집으로 나왔을 때 망 소외 2로부터 자기가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업무용차량을 타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회사에 고용된 망 소외 2가 이 사건 승합차를 그 소유자인 피고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인 위 망 최**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승합차에 무상동승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피용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이다(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9085 판결)

13)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에서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동승자의 타인성은 그대로 놔둔 채 보유자의 운행자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동승자의 내부적 사정 내지 주관적인 인식 여하에 따라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동승자의 타인성 조각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비판론)가 매우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비판론의 의견처럼 동승자의 타인성 조각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무단운전의 내용, 경위, 목적, 탑승경위, 적극종용 여부 등에 따라 동승자가 타인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유자뿐만 아니라 무단운전자도 동승자에 대해 운행자 책임을 면하게 된다(사법연수원 著 '손해배상소송' 참조).

- 자동차수리업자의 피용자가 수리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영업시간 이후에 위 피용자의 고종사촌동생인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 줄 목적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더구나 위 피용자가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책상서랍을 강제로 열어 열쇠를 무단절취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도 위 피용자에게 먼저 차를 태워달라고 제의하여 차량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위 피해자 및 만 17세인 피용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피용자의 무단운전 후의 차량반환의사와 운행의 임시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차량의 운행은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21856 판결)

사례

극단성이 높지 않은 무단운전이라고 한 사례★★★★

- 미성년 자녀(무면허)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아버지 몰래 피보험차량을 운전 중 동승한 친구들이 다친 사고에서 아버지의 운행자책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0544 판결)
- 친구들과 집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놀러가자고 제의하여 아버지 몰래 차량을 갖고 나가 무면허로 운전 중 동승한 친구들이 사상한 사고에서 아버지의 운행자책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80631 판결)
- 외사촌 형이 경영하는 카센터에서 심부름 등을 하여 주고 정비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자가(당시 18세) 평소 외사촌 형의 거실 탁자 위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 중 동승한 친구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61395 판결)
- 아버지가 출타 중에,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던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아버지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을 태우고 03 : 00 경, 드라이브를 시켜주다가 운전자 및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아버지의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2 판결)
- 미성년 아들(고1, 무면허)이 아버지가 제주도에 간 사이,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소유 그레이스 승합차에 들어가 함께 놀다가 다음날 01 : 00경 친구들을 태우고 인근에 있는 친구의 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02 : 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되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아 승합차 동승자인 친구들이 사망한 사고에서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7.8. 선고 97다15685 판결)

(4) 무단운전자의 배상책임 관계

무단운전자는 운행자로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피해자가 차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 여부와 무단운전의 극단성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의 경우에도 무단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운행자 책임은 긍정된다).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민법 제750조 책임도 부담한다.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차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 무단운전의 극단성 여부는 당연히 고려대상이 아니다.

[무단운전 시 보유자 및 무단운전자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부담관계]

구분		보유자	무단운전자
차 외부인		○	○
차내 탑승객	극단성 ↑	×	○
	극단성 ↓	○	○

사례연습문제 01

"종업원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 차를 절대 운전하지 말라"는 사장(A)의 지시를 무시하고, 사무실 서랍에 보관된 자동차 Key를 종업원(B)이 임의로 꺼내어 무면허인 상태로 사장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C)을 치상케 한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계? 사례기출 00

답안

(1) 배상책임 판단 요령

- **민법상 책임은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며**,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이 발생한다(과실책임주의).
- **자배법상 책임**을 논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해 사고가 어떤 사고 유형(무단운전, 절취운전, 임대차, 명의잔존 등등)에 해당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 다음 책임주체에 있는 자(운행자)와 책임객체(타인)에 있는 자를 신속히 가려내야 한다. 책임주체에 있는 자를 상단에 가로로 배열시키고 객체에 있는 자를 그 하단에 역삼각형 형태로 배치시킨다(그림을 그린다).
  마지막으로 자배법 3조 단서상의 면책사유를 검증한다. 자차 무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자차 승객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승객의 고의, 자살일 경우에는 예외) 승객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면책된다는 사실을 유의한다.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승객이든 승객 이외의 자이든 면책사유가 없으므로 자배법 3조 단서상의 면책사유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책임주체 요건, 책임객체 요건 결여에 따른 면책과 구별)
  따라서 자배법 3조 단서상의 면책사유를 검증해야하는 경우는 자차 무과실 사고에 국한된다고 보면 된다. 운행중 사고 해당 여부 및 운행기인성 해당 여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2) 쟁점판단

- 사고유형 : 무단운전 사례이다. 무단운전에서 피해자가 차 외부인인 경우에는 무단운전의 극단성 여부를 불문하고 보유자가 자배법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신속히 간파하여야 한다.
- 책임주체와 책임객체 : A는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과 B는 회사 종업원으로서 무단운전 중이었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판단하고 C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함을 판단한다.
- 자배법 제3조상의 자차 무과실책임 : 무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3) 결론

A는 운행자 책임을(756조 책임은 없다), B는 운행자 책임 및 민법 750조 책임을 부담한다.

사례연습문제 02

아버지(A) 몰래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 자녀(B)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의 요청으로(친구가 목적지 까지 태워달라고 요청)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옆에 주차해둔 아버지 소유 차량을 음주(0.063%), 무면허로 운전중 동승한 친구(C)가 다친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관계?

답안

(1) 배상책임 판단 요령 : 생략(사례연습문제 01 참조)

(2) 쟁점판단

- 사고유형 : 무단운전 사례이다. 무단운전의 경우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발생 여부가 관건인데 무단운전에서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이 아닌 한 보유자는 자배법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신속히 간파하여야 한다.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는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사회적 비난가능성 ↑, 선해할만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본 바, 비록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탑승한 피해자도 같이 음주한 채 무단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 경향을 떠올려 보유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임을 판단한다.
- 책임주체와 책임객체 : A는 운행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B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음과 C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함을 판단한다.
- 자배법 제3조상의 자차 무과실책임 : 무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3) 결론

A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 B는 운행자 책임 및 민법 750조 책임을 부담한다.

사례연습문제 03

A 회사 소유 업무용 차량을 직원 B가 업무종료후 가지고 나와 23 : 00경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 C, D와 합류한 뒤 D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시내(대구)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02 : 00경까지 4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시 그곳으로부터 포항시까지 놀러가기로 의기 투합하여 술집을 나와 처음에는 B가 운전하다가 술기운으로 인해 운전의 곤란함을 느껴 D로 하여금 운전케 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C가 사망하고 보행인 F가 다친 사고에서 C와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계?

답안

(1) 배상책임 판단 요령 : 생략(사례연습문제 01 참조)

(2) 쟁점판단

- 사고유형 : 무단운전 사례이다. 무단운전의 경우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발생 여부가 관건인데 무단운전에서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이 아닌 한 보유자는 자배법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신속히 간파하여야 한다.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는 극단성이 높은 무단운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본 바, 탑승 피해자가 무단운전 사실을 인지한 점, 계속되는 음주 후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이동하여 유흥을 계속 즐기려했던 점 등을 근거로 극단성이 높은(사회적 비난가능성↑, 선해할만한 사정↓) 무단운전으로 판단한다. 다만, 보행인은 무단운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이므로 보유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여야 한다.
- 책임주체와 책임객체 : A는 C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만 F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과

B와 D는 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음과(따라서 C와 F에 대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C와 F는 각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함을 판단한다.

- 자배법 제3조상의 자차 무과실책임 : 무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3) 결론

A는 F에 대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 B는 C와 F에 대해 운행자 책임을, D는 C와 F에 대해 운행자 책임 및 민법 750조 책임을 부담한다.

유제

B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관계는?

답안

사고 당시 운행자 지위에 있으므로 객체요건(자배법상 타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 D가 민법 750조 책임만 부담한다.

2 절취운전 사례기출 12

(1) 개념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보유자에게 차량을 되돌려 줄 생각 없이 불법영득(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의 의사로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2) 무단운전과의 차이점

보유자의 사후승낙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차량반환의 의사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운전하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반면 절취운전은 원칙적으로 절취순간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3) 보유자의 배상책임 관계

무단운전에서 무단운전자의 운행자성이 이론(異論) 없이 인정되었듯이 절취운전에서도 절취운전자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이론(異論)이 없다. 문제는 역시 보유자의 운행자성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그 책임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다3788 판결 외 다수). 따라서 보유자는 운행자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었지만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정반대인 것이다.

②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유자의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절취가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61410 판결). **예컨대**,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전석을 떠나면서 잠금장치를 제대로 했음에도 절취자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절취를 했다면 보유자에게 민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시동키를 꽂아놓거나 출입문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이석함으로써 절취가 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유자는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750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③ **민법상 책임이 발생할 때 자배법상 책임이 중첩적용 되는지에 대한 학설대립** : 살펴본 것처럼 절취운전의 경우 보유자는 자배법 및 민법상 책임을 면하지만 보유자에게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 이때(보유자에게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때) 보유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도 병행하여 부담하는지에 대해 자배법 적용설과 자배법 비적용설이 대립되어 왔는데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은 자배법 적용설의 입장에 서있다.

✤ 민법상 책임이 발생하면 자배법이 중첩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려고 하지 말고 공식처럼 그냥 암기 바랍니다.

결국 절취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자는 자동차 절취와 함께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책임을 모두 면하지만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더 나아가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절취운전에서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유자와 절취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놓이게 되고 피해자가 보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절취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절취운전자의 배상책임 관계

절취운전자는 운행자이므로 당연히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 동승 피해자가 절취차량임을 알고 탑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동승 피해자에 대한 절취운전자의 운행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절취사실을 알고 탑승한 것만으로는 그 탑승자가 절취운전자와 공동운행자가 된다거나 타인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절취운전의 공범, 방조범은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므로(= 타인성 조각 = 손해배상 객체요건 상실) 이들에 대하여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상 책임은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방조범)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